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66호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 현행 모태자펀드 운용사 선정절차 중 2차 심사는 한국벤처투자 대표 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심의회를 통해 진행  
⇒ 대표이사가 출자심의회에 참여시 이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출자심의회 구성 시 대표이사를 배제하여 출자심의회의 공정성을 강화

#### 2. 주요 내용

- (제8조제2항) 출자심의회 의원을 KVIC 대표이사를 제외한 부서장급 임직원 및 외부 민간 전문가 7인 이내로 규정

제8조(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②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 및 자조합 투자·출자 관련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8조제3항) 출자심의회 의장은 출자심의회 주관 부서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규정

제8조(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③ 출자심의회의 의장은 출자심의회의 의원 중 해당 출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유고 시에는 참석한 다른 부서장급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3. 8.(수)~3. 20.(월)

4. 의견 제출

-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벤처투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우편 : (30121) 세종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 전자우편(이메일) : jwchu@korea.kr, sh98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044-204-7713, 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안) 전문 1부.

##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73호, 2021. 10. 25., 제정  
 중소기업부고시 제2022-88호, 2022. 12. 15., 일부개정  
 중소기업부고시 제2023-00호, 2023. 00. 0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의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 감독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원칙) 한국벤처투자의 조직과 예산, 인력의 운용은 모태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규정 변경의 승인)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 시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
2. 모태조합 출자관리규정 및 지침
3. 모태조합이 출자한 조합(이하 "자조합"이라 한다) 중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조합 또는 회사의 운영규정 및 지침

제4조(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한국벤처투자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 이전에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여 12월31일까지 이사회 승인 후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결산서의 제출) 한국벤처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장부의 열람)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벤처투자의 회계장부 및 기록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업무집행 상황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벤처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벤처투자의 임직원이 한국벤처투자의 건전한 운영을 해하거나 내부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징계의 요구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8조(출자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자산의 투명성, 전문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위하여 출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출자심의회의 의원은 한국벤처투자의 모태조합 및 자조합 투자·출자 관련 부서장급 임직원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출자심의회의 의장은 출자심의회의 의원 중 해당 출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벤처투자의 부서장급 임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유고 시에는 참석한 다른 부서장급 임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출자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조합 운영기관 선정, 투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모태조합 관리·운용원칙)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공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측정하며 관리·통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자산을 모태조합 자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운용하며 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의2(벤처투자모태조합의 출자 범위) 법 제7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0조(모태조합의 운용계획 수립) ① 한국벤처투자는 해당 연도 모태

조합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계획에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변경내용과 변경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태조합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에 출자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태조합운용협의회를 둔다.

⑤ 제4항의 모태조합운용협회의 설치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모태조합의 운용실적 제출) ① 한국벤처투자는 전년도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에는 자조합의 업무운용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모태조합 규약의 작성시 사전협의) ①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출자자와 협의하여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태조합 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모태조합 성과평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모태조합 운용내역 공시)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모태조합 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대표 이사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은행 선정) ① 모태조합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수탁은행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벤처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은행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업무능력, 모태조합 자산의 운용상황을 상시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의 도입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0월 2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73호,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88호, 2022. 12.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00호, 2023. 00. 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